

대법원 2017도14889 사건 보도자료
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살인)

대법원 공보관실(02-3480-1451)

대법원(제1부, 주심 대법관 김신)은 2017. 12. 22. 나주 드들강 여고생 강간살인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음(대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7도14889 판결).

1. 사안의 내용

- ▣ 공소사실 요지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살인)]
 - 피고인은 2001. 2. 4. 새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나주에 있는 드들강변으로 데리고 가 강간한 다음,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물속에 집어넣고 목을 졸라 살해하였음
- ▣ 원심의 판단
 - 쌍방 항소기각[제1심: 무기징역,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(40시간),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(20년)]
- ▣ 상고이유의 요지
 -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상고함(항소심의 속심적 성격과 무죄추정의 원칙,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,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였음)
 -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함(사형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함)

2. 대법원의 판단

▣ 판결 결과

- 쌍방 상고기각

▣ 피고인 상고에 대한 판단의 근거

- 피해자의 행적과 사체에서 발견된 상처에 비추어 볼 때, 피해자는 강간을 당한 뒤 물속에서 목이 졸려 사망하였음
- 정액과 혈액은 서로 맞닿아 있을 때 천천히 움직이더라도 짧은 시간 내에 완전히 섞여 전체가 균질한 붉은 색을 띠게 되는데, 피해자의 질 내에서 피고인의 정액과 피해자의 생리혈이 섞이지 아니한 채 검출되었으므로,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한 직후 정액과 혈액이 서로 맞닿아 섞이기 전에 살해하였음이 인정됨

▣ 검사 상고에 대한 판단의 근거

- 무기징역이 선고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음

3. 판결의 의의

- ▣ 16년 전 나주 드들강변에서 여고생을 강간살인한 사건의 진범이 피고인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이를 확정하였음